

인천광역시서해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hae.go.kr>

선

기관의장

람

제2036호

2026. 10. 15.(목)

차 례

공 고

- | | | |
|---------------------|---------------------------------------|---------|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100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1 |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101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7 |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102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 19 |

기 타

- | | | |
|---------------------------|------------------------|---------|
| ○롯데우림아파트주택건축장비사업조합 고시 제1호 | 롯데우림아파트 주택재건축장비사업 이전고시 | ———— 26 |
|---------------------------|------------------------|---------|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100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5.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1916,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 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자치법규명

성명(단체명/대표자)

2.

주 소

3. 의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101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0. 15.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안 제4조)
-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기능(안 제5조)
-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안 제6조)
- 바. 평가 및 포상(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1916,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안 제4조)
-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기능(안 제5조)
-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안 제6조)
- 바. 평가 및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기타 구의 주요사업 중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 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③ 총괄부서는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 등) 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의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장관 ○○○ 차관 ○○○ 실장 ○○○ 국장 ○○○ 과장 ○○○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기재항목>

- ① 정책사업명: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 ② 추진배경: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 ③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 ④ 사업부서: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 ⑤ 담 당 자: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 ⑥ 선정기준: 주요 규정현안 / 대규모 공사· 예산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 조례, 규칙 등 제정사항 / 기타 보존할 필요 있는 사항
- ⑦ 사업기간: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 그간 주요 추진내용: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 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 일시 및 관련자: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illegible]

〈기재항목〉

-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6-1, 2026-2)
- ② 정 책 명: 사업명을 기재
- ③ 사업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 ④ 담 당 자: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관계 법령 발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4. 2. 18.]

☐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3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숭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 8.>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5.10.30)
5. 사회단체회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1.4.18)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신설 2011.4.18)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10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5.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해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사항 등 신설된 제도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겸임 근거 마련(안 제3조)
- 나. 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 정비(안 제4조제2호)
- 다. 위원회 운영 근거 인용 조항 정비(안 제8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1912,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사항 등 신설된 제도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겸임 근거 마련(안 제3조)
- 나. 위원회 심의 대상 범위 정비(안 제4조제2호)
- 다. 위원회 운영 근거 인용 조항 정비(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2026-2102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전담부서의 지정)”을 “(전담부서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 제2호 중 “제4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제7항”를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u>전담부서의 지정</u>) (생략) <u><신설></u>	제3조(<u>전담부서의 지정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u>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u>제4호까지</u> 에 관한 사항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제7호까지</u>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u>제7항</u> 에 따라 운영한다. ② (생략)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 ----- <u>제8항까지</u> 의 규정--.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7조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위원장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롯데우람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6-1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조합설립인가 (2015. 11. 11.),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92호 (2019.05.13) 사업시행계획인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0-94호 (2020.06.08.) 관리처분계획인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4-223호 (2024.11.19.) 준공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663번지 (舊491-3번지일대)일원 롯데우람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롯데우람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재건축사업(舊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 칭: 롯데우람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 663번지(舊 491-3번지일대) 일원
- 나. 면 적: 15,24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의 명칭: 롯데우람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사무소 소재지: 서해구 신석로122번길 19, 3층(석남동, 원광빌딩)
- 다. 대표자의 성명: 조합장 조천휘

4. 사업시행계획인가 최초 고시일: 2019년 5월 13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 최초 고시일: 2020년 6월 8일
6. 관리처분계획 변경 최초 고시일: 2025년 9월 29일
7. 준공인가 고시일: 2024년 11월 19일
8. 이전고시 내역

- ① 건축규모: 지하 4층 ~ 지상 29층, 공동주택 아파트 4개동, 오피스텔 1개동, 근린생활시설
- ② 건물명칭: 브라운스톤 더 프라임

가. 토지의 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5244.7	100.0	
획 지	소 계	13028.6	100.0	
	획 지	13028.6	100.0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216.1	100.0	
	도 로	1848	100.0	해당사항 없음
	주차장	368.1	100.0	

나. 신축 건축물 설계개요

■ 건축개요

사업부지	15,244.7㎡	대지면적	13,028.6㎡	제외면적	2,216.1㎡
건축면적	2,894.0782㎡	용적률	446.1613%		
건축연면적	84,791.9922㎡	지상연면적	58,128.5715㎡		
		지하연면적	26,663.4207㎡		
주차장면적	24029.0536㎡	주차대수	719대(법정 653대)		
건축규모	지하 4층 ~ 지상 29층, 공동주택 아파트 4개동 511세대, 오피스텔 1개동 134호실,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16호실				

■ 신축 아파트 분양면적표

구 분		세대수	분양면적(공급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 면적(㎡)	대지 지분(㎡)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계 (㎡)				
일반, 조합원	59A	222	59.3534	21.7195	81.0729	2.5170	33.4584	117.0483	18.1968
	59B	57	59.5699	23.4453	83.0152	2.5262	33.5804	119.1218	18.2632
	74A	109	74.4273	27.3260	101.7533	3.1563	41.9557	146.8653	22.8182
	74B	57	74.1924	27.6212	101.8136	3.1464	41.8233	146.7833	22.7462
	84A	57	84.8793	30.1510	115.0303	3.5996	47.8477	166.4776	26.0226
소 계		502	33751.6017	12429.6605	46181.2622	1431.3261	19026.2659	66638.8542	10347.6974

■ 신축 아파트 분양면적표 (보류지)

구 분	주택 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 세대수(㎡)						비 고
	타입	59A	59B	74A	74B	84A	
공급대상	전용면적(㎡)	59.3534	59.5699	74.4273	74.1924	84.8793	
	대지지분(㎡)	18.1968	18.2632	22.8182	22.7462	26.0237	
보류지	9세대	4	1	2	1	1	

■ 신축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표

구 분	호 수	분양면적(공급면적)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약면 적(㎡)	대지 지분(㎡)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계 (㎡)				
조합원	A01	32.2905	8.0974	40.3879	1.1377	18.4939	60.0195	9.8997
	A02	32.1540	8.0632	40.2172	1.1329	18.4157	59.7658	9.8579
	A03	31.6880	7.9463	39.6343	1.1165	18.1488	58.8996	9.715
	A04	37.7460	9.4655	47.2115	1.3299	21.6185	70.1599	11.5723
	A05	46.2070	11.5872	57.7942	1.628	26.4644	85.8866	14.1663
	B01	127.7972	36.9177	164.7149	4.5028	73.1939	242.4116	39.1806
	B02	119.7913	34.6050	154.3963	4.2206	68.6088	227.2257	36.7261
	B03	36.5750	10.5657	47.1407	1.2887	20.9477	69.3771	13.5096
	B04	44.0650	12.7294	56.7944	1.5526	25.2375	83.5845	17.5121
	B05	57.1200	16.5006	73.6206	2.0125	32.7148	108.3479	8.2571
	B06	26.9325	7.7802	34.7127	0.9489	15.4252	51.0868	11.2133
	B07	40.7095	11.7601	52.4696	1.4343	23.3157	77.2196	12.4809
	B08	66.4100	19.1843	85.5943	2.3398	38.0355	125.9696	20.3602
	B09	29.1103	8.4093	37.5196	1.0257	16.6724	55.2177	8.9247
	B10	30.5297	8.8193	39.3490	1.0757	17.4854	57.9101	9.3599
	B11	36.5400	10.5556	47.0956	1.2874	20.9277	69.3107	11.2026
소 계	16개호실	795.6660	222.9868	1,018.6528	28.0340	455.7059	1,502.3927	243.9383

■ 신축 준주택, 업무용(오피스텔) 분양면적표

구 분		세대수	분양면적(공급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 면적(㎡)	대지 지분(㎡)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계 (㎡)				
일반	54A	90	54.9045	26.6183	81.5228	2.3221	31.4457	115.2906	16.8328
	54B	44	54.6015	27.2778	81.8793	2.3093	31.2722	115.4608	16.7399
소 계		134	7343.871	3595.867	10939.74	310.599	4206.0931	15456.4299	2251.5076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역(분양받은 건축시설 또는 대지에 존속되는 담보권 등)

권리 종류	근저당	가압류	압류	비고
건수	15		1	

※ 이수건설(주) 및 ㈜한국토지신탁 관련 가압류 총 3건은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 접수가 모두 완료된 상태임.

라. 지적 확정 조서

■ 폐쇄할 종전 지적의 표시

종전 지적의 표시 (폐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1	석남동	491-3	대	1760	폐쇄
2	석남동	491-4	대	1013.6	폐쇄
3	석남동	491-5	대	89.3	폐쇄
4	석남동	492	대	695.4	폐쇄
5	석남동	492-1	대	5197.7	폐쇄
6	석남동	492-2	도로	101.8	폐쇄
7	석남동	493	대	5416	폐쇄
8	석남동	633-1	도로	968.7	폐쇄
9	석남동	633-2	도로	0.7	폐쇄
10	석남동	633-3	도로	0.8	폐쇄

■ 확정 지적의 표시

확정 지적의 표시 (시행)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석남동	663	대	13028.6	이전고시 조서와 같음
2	석남동	662	주차장	368.1	인천광역시
3	석남동	661	도로	486.3	인천광역시
4	석남동	664	도로	417.6	인천광역시
5	석남동	665	도로	189.1	인천광역시
6	석남동	666	도로	404.5	인천광역시
7	석남동	667	도로	350.5	인천광역시

9. 관계 서류는 롯데우람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32-578-907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